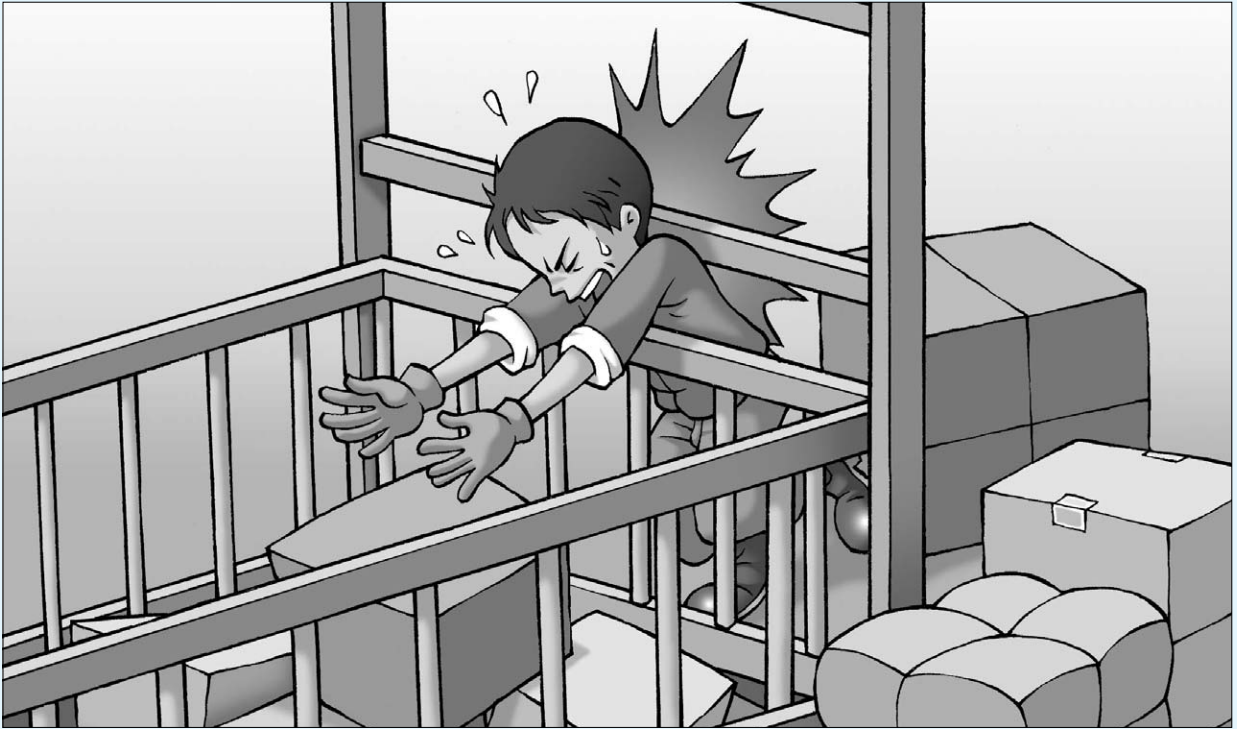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내부 정리작업 중 협착



1. 재해발생 경위

2006년 1월 ○일 11:00경 인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에 물건을 적재한 후 1층에서 2층으로 운반하던 중 불량적재된 제품이 승강로 사이에 끼이자 재해자가 2층 승강로 측면 프레임 사이로 상체를 집어 넣고 불량적재된 제품을 정리하던 중 상승하는 운반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협착 위험구역내 접근금지 미조치
- 나. 작업방법 불량

3. 동종재해예방대책

- 가. 리프트 승강로에 접근금지 조치
승강로에 신체의 일부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방호울 등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함.
- 나. 운반구 물건반입구 주위에 방호울 설치
운반구 물건반입구 주위에 1.8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운반구 물건반입구의 방호울은 출입문 형태로 설치



재해사례연구 협착사고 I

하여야 함.

다. 리프트 조작스위치 구조 변경

리프트 운반구 조작스witch는 누르고 있을 때에만 작동하고 손을 떼면 즉시 정지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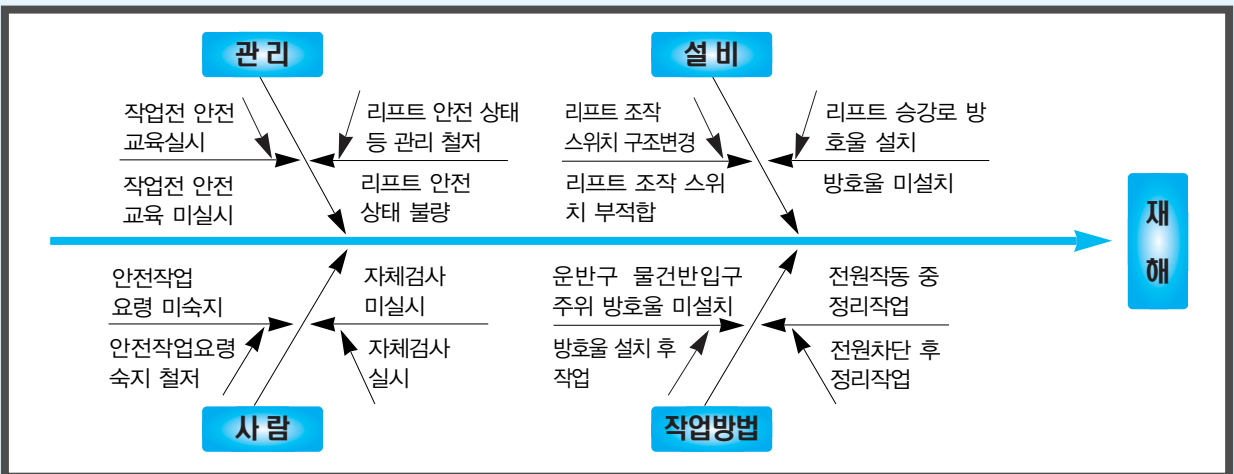
라. 자체검사 실시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상태, 가이드 레일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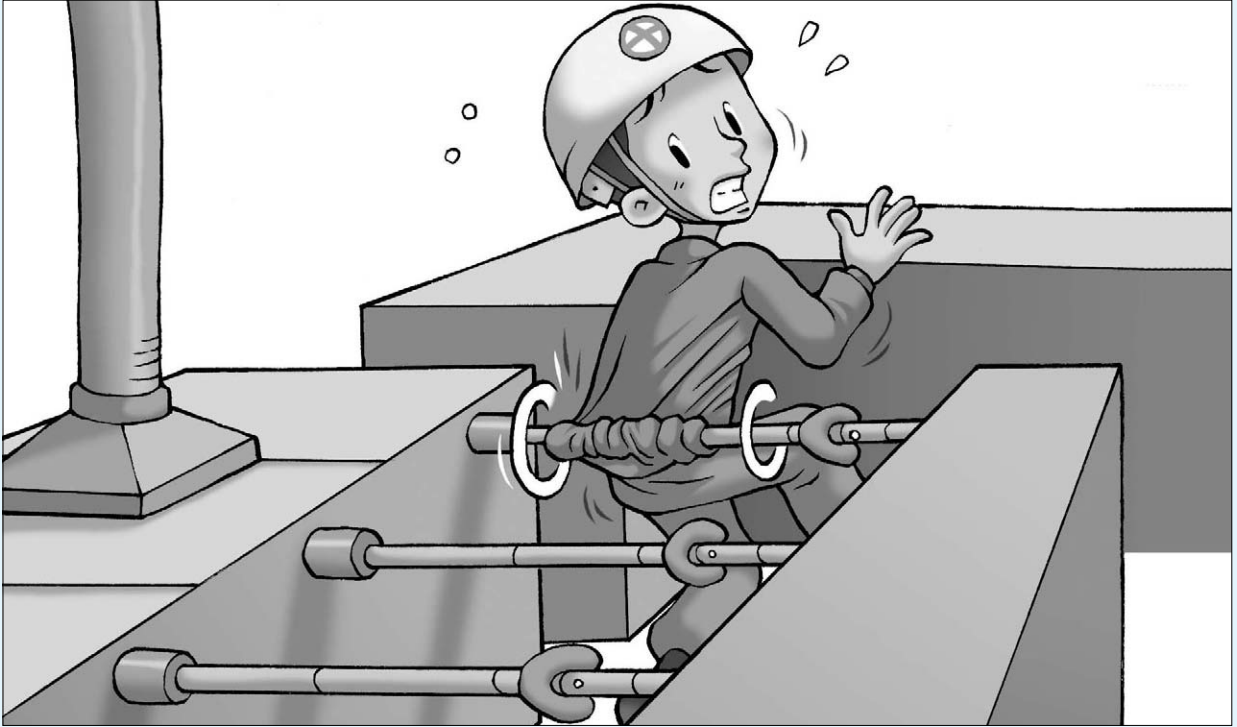
4.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목재 다편절단기(갱립쇼우) 청소·보수작업중 협착



1. 재해발생 경위

2006년 1월 ○일 07:50경 경남 소재 ○○제재소에서 재해자가 목재 절단기(갱립쇼우)의 유니버설 조인트 측면에서 청소 또는 보수작업 중 회전하는 유니버설 조인트에 작업복 상의가 말려들어 흉부 협착으로 사망한 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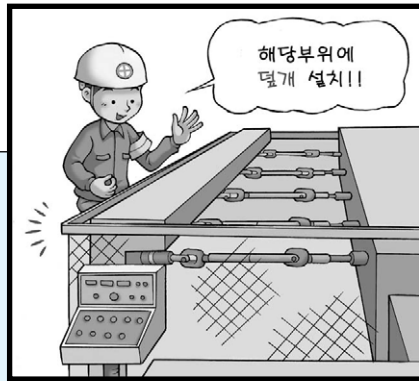
2. 재해발생요인

- 가. 회전축 등에 위험방지 미조치
- 나.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다. 작업복 착용상태 불량

3. 동종재해예방대책

- 가. 회전축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회전축(유니버설 조인트 등)에 부속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문힘형으로 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재해사례연구 협착사고 II

나.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가동 중인 기계설비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등의 작업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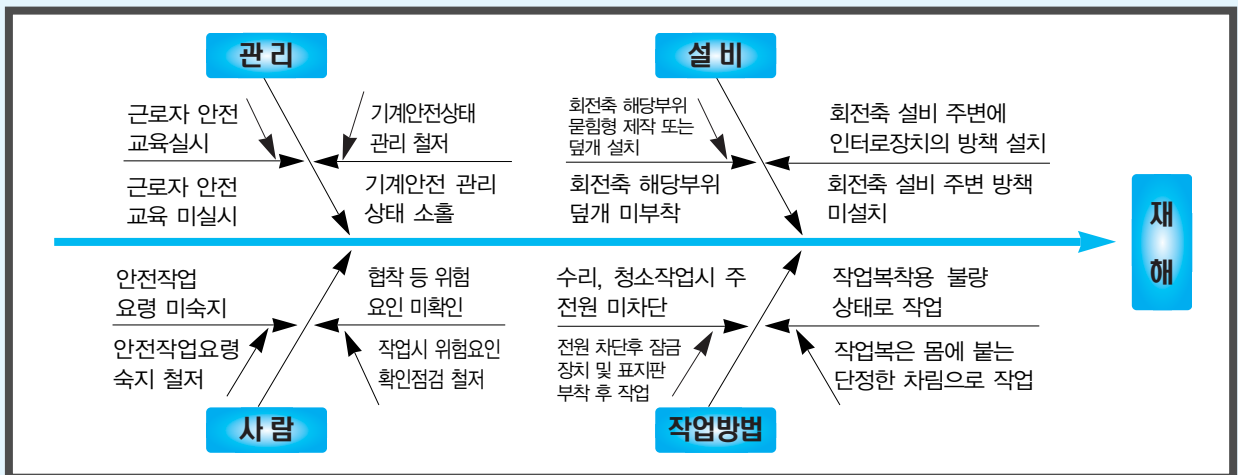
다. 양호한 작업복 착용

작업복은 너털거림이 없이 몸에 붙어 작업에 용이한 기능의 작업복을 착용해야함.

4.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청소차량 적재함 이물질 제거작업 중 파카에 협착



1. 재해발생 경위

2006년 1월 ○일 07:30경 경남 소재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해자가 청소차량으로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청소차량 적재함에 연결된 파카를 개방하여 비운 후 파카를 닫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남아 있던 이물질(자석)을 제거하다가 파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청소차량 파카 작동 중 위험구역내 접근
- 나. 파카조작스위치 설치위치 부적절 및 비상정지스위치 미설치
- 다. 작업자간 신호체제 부재

3. 동종재해예방대책

- 가. 청소차량 파카 작동 중 위험구역내 접근금지

청소차량 파카 작동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청소작업(이물질 제거) 등을 실시하여야 함.



재해사례연구 협착사고 Ⅲ

나. 파카조작스위치 설치위치 변경 및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청소차량 파카의 개방·폐쇄 조작스위치는 적재함쪽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적재함 뒤편에 설치하고, 급박한 위험발생시 파카 등을 긴급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작업자간 신호체계 마련

부득이하게 운전석에서 파카 개방·폐쇄를 조작하는 경우 작업자간에 일정한 신호체제(부저사용 등)에 따라 신호한 후 파카 개방·폐쇄를 하여야 함.

4.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